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0
------------	-----

2011년 2월 22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2월 10일, 공석호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11년 2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1.2.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공석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전철역 또는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교통상황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정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 특성상 충분한 주차장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까지도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동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지하철역 등의 출입구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1조제1항, 별표1 비고 제3호가목(11))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안석수)

- 동 개정조례안은 “전철역 또는 지하철역 등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500m 이내 지역”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을 규정한 조항을 전철역 및 지하철역 인근지역 중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별표1 비고 제3호가목(11))
- 서울시에서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1997년부터 4대문안, 신촌, 영등포, 강남, 잠실 등의 지역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09년 3월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철역 및 지하철역 등의 출입구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였음.
- 그러나, 지하철 및 전철역 출입구 등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 모두를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치 못한 획일적 규정으로 그동안 민원이 적지 않았으며¹⁾, 동 조례 개정 이후 서울시의회에서도 대규모 공공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부지역 및 사업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²⁾
- 현재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관련 근거법령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자치단체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규정하는 등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 중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를 지하철 및 전철역 출입구 등으로부터 500m 이내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바, 서울시내 지하철역 등이 341개에 이르고 역간 간격이 평균 1.09km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규정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을 과도하게 확대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서와 같이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통혼잡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코자 한

1) 상봉터미널 복합개발사업(중랑구청장 서울시장 면담), 은평구 응암동 주거복합신축사업 등
2) '09.11.11, 최홍우 의원 발의, 별표1 비고 제3호가목(11) 본문의 단서규정을 “다만, 농수산물 등의 원활한 유통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

것은 획일적인 규제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규제를 가하도록 한 행정법상의 비례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임.

- 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는 상황으로, 동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는 교통혼잡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서두르는 등, 후속조치를 적극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별표1 비고 제3호가목(1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p> <p>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u>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p> <p>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u></p> <p>1. <u>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u></p> <p>2. <u>「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u></p>
<p>[별 표 1]</p> <p><비 고>제3호 가목</p> <p><u>(11)전철역 또는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지역. 다만, 농수산물 등의 원활한 유통과 도시경쟁력 확보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개발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u></p>	<p>[별 표 1]</p> <p><비 고>제3호 가목</p> <p><u>(삭제)</u></p>